

喪禮 五服制度 研究

金 時 晃*

• 目 次 •

I. 序 論	V. 妻爲夫黨 服制
II. 服制의 起源 및 變遷	VI. 外族母黨 妻黨 服制
III. 成服 및 服制의 基準	VII. 三 殤
IV. 本宗 五服制度	VIII. 結 言
IV. 三父 八母 服制	

I. 序 論

喪事가 나서 殯이 끝나면 銘旌을 세우고 靈座를 排設한 다음 喪主 이하 여러 服人이 喪服을 입는다. 喪服은 모두 삼베로 지으며 精密하게 꿰매지 않고 오라기가 너털거리게 만드는데 이것은 喪을 당한 不孝 罪人이라는 데서 온 것이다. 漢의 鄭玄은 喪服을 입는 것을 至痛을 表示하는 것이라 하였다. 喪服에는 斬衰 齊衰 苴經 杖 絞帶 菅屨 등이 있는데, 喪期에 따라 斬衰 齊衰는 三年 大功은 九月 小功은 五月 總麻는 三月 동안 입게 된다.

孟子는 ‘오직 죽는 이를 보내는 일은 큰 일이라 할 수 있다’ 고 하였다.¹⁾ 그리고 鄭道傳은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夫死者 親之終而 人道之大變也 故先王愼之 作喪制 達之天下 使天下之爲人子者 世守之. 哭泣擗踊 情之變也 殯而食粥 虞而食蔬 食菜羹 祥而食蔬果 飲食之變也 袒括齊衰 服之變也 枕塊寢苫 外而不內 居之變也 人子愛親之情 至此極矣. 然猶未也 虞而哭 期而悲 祥而憂 忌而慕 愈久而愈不忘 蓋亦出於中心之誠 非勉而爲之也’²⁾

<죽음이라는 것은 친함이 끝나므로 사람의 道理가 크게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先王들이 삼가 喪制를 마련하여 天下에 통해 세상의 자식 된 이로써 代代로 지키게 했다. 울며 가슴을 치고 뛰는 것은 情의 變함

* 慶北大學校 教授

1) ‘惟送死 可以當大事’ 孟子 離婁 下 13.

2) 鄭道傳, 三峯集 卷七, 朝鮮經國典 上, 禮典 喪制.

이고, 殯所를 짓고 죽을 먹으며 虞祭를 지내고 나물 밥 나물 국을 먹으며 小祥 大祥이 되어 菜蔬와 實果를 먹는 것은 飲食의 變함이고, 어깨를 벗으며 喪服을 입는 것은 옷의 變함이고, 흙덩이를 베며 거적에 자고, 바깥에 거처하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居處의 變함이니 사람의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情이 이에 이르러 至極한 것이다.

그러나 오리려 그렇지 못해 虞祭에도 못하며, 期年에도 슬퍼하며, 小祥 大祥에도 근심하며, 忌祭 때도 思慕하여 더욱 오래 되어도 더욱 잊지 못하는 것은 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오는 精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喪服의 制度는 매우 오래었다. 黃帝 以前에는 心喪으로 終身토록 變하지 않았고, 堯舜時代에도 心喪三年으로 또한 服制가 없었다. 오직 吉凶에 같은 옷을 입어 흰 베옷과 흰 베 冠뿐이었다. 後世에 聖人들이 바꾸어 喪服을 만들었으니, 夏禹 以下 三王의 시대에는 堯舜 시대의 흰 베옷과 흰 베 冠으로 喪服을 하였다.

사람이 죽었을 때 산 사람이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모양으로써 마음을 표하는 것이고, 옷으로써 모양을 표하는 것이다. 斬衰의 모양은 苴³⁾와 같고, 齊衰의 모양은 枲⁴⁾와 같고, 大功의 모양은 止⁵⁾와 같고, 小功 緦麻의 모양은 평상과 같다. 슬픔에 깊고 얕음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이와 같이 같지 않으며, 베 또한 정하고 추한 것이 있다.⁶⁾

이와 같이 옛날에는 喪服의 제도가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누구나 喪主로서의 예의를 갖추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였으며, 일상생활이나 言行도 남다르게 조심하여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히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制度와 禮節이 무너져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르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 가정에 따라 종교에 따라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거나, 누가 하라는 대로 아니면 시키는 대로 끌려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現狀을 慨歎하여, 현실 생활에 무리가 없는 어떤 制度와 方法을 摸索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옛날 제도가 어떤 것이었나를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變貌되어 있는가를 팔피고자, 우선 옛 것부터 정리해 본다.

3) 苴; 암삼저.

4) 枲; 수삼저.

5) 止; 停. 靜.

6) 東巖 柳長源, 常變通攷 卷九, 喪禮 三, 成服.

II. 服制的 起源 및 變遷

1. 服制的 起源

服制的 起源은 매우 오래다. 周禮 儀禮 禮記를 비롯하여 여러 文獻에 服制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다. 周禮에 나타난 것은 아래와 같다.

周禮 大官冢宰 第一 閭人: ‘喪服 凶器 不入宮’ 喪服 衰經也.

周禮 春官宗伯 第三 司服: ‘凡凶事 服弁服 凡弔事 弁經服 凡喪 爲天王 斬衰 爲王后 齊衰 王爲三公六卿 錫衰 爲諸侯總衰 爲大夫士 疑衰 其首服皆弁經 大札 大荒 大災 素服 公之服 自袞冕而下 如王之服 侯伯之服 自鷩冕而下 如公之服 子男之服 自毳冕而下 如侯伯之服 孤之服 自希冕而下 如子男之服 卿大夫之服 自玄冕而下 如孤之服 其凶服 加以大功小功士之服 自皮弁而下 如大夫之服 其凶服 亦如之 其齊服 有玄端素端’⁷⁾

儀禮에는 喪服 第十一, 儀禮注疏 卷第二十八에서 卷第三十四까지의 喪服條에는 服制에 關한 것이 아주 자세히 잘 되어 있다.⁸⁾

禮記에는 喪服小記 第十五, 禮記注疏 卷第三十二 三十三 喪服小記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服制에 關한 것이 있다. 그 밖에 經典에 斷片的으로 나타난 것이 많지만 다 言及할 수 없어 줄인다.

2. 三年之喪

論語 陽貨篇에 三年喪에 대하여 ‘宰我의 물음에 孔子가 答한 것이 있다

‘宰我问 三年之喪 期已久矣 君子三年不爲禮 禮必壞 三年不爲樂 樂必崩 舊穀既沒 新穀既升 鑽燧改火 期可已矣 子曰 食夫稻 衣夫錦 於女安乎 曰安 女安即爲之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 故不爲也 今女安即爲之 宰我出 子曰 予之不仁也 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有三年之 愛於其父母乎’

<宰我が 묻기를 ‘三年喪은 期年만 하더라도 너무 오래다고 할 것입니다. 君子가 三年 동안 禮를 行하지 않으면 禮가 반드시 무너지고, 三年 동안 音樂을 익히지 않으면 音樂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목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새 곡식이 오르면, 불씨 만드는 나무도 바뀌어 지니, 一

7) 王雲五 主編, 林尹 註釋, <周禮今註今釋> 臺灣 商務印書館 發行, 中華民國 七十六年 九月 221面.

8) <十三經注疏> 4, 儀禮, 藝文印書館 印行, 337面-407面.

年이면 그칠 만할 것입니다' 하니까, 孔子가 말하기를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는 便安하나' 하시니 宰我が '便安합니다' 하였다. 孔子가 '네가 便安하면 그리 해라. 君子가 居喪할 때에 맛 있는 것을 먹어도 달지 않으며, 音樂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居處함에 便安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니, 네가 便安하면 그리 해라' 하였다. 宰我が 밖으로 나가자, 孔子가 말씀하셨다. '宰予의 어질지 못함이며, 자식이 태어나서 三年이 지난 뒤에야 父母의 품을 벗어나게 된다. 三年喪은 온 天下의 共通된 喪이니, 宰予는 三年의 사랑이 그 父母에게 있었는가' >

이에 대해 范氏는 論語 同 註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喪雖止於三年 然賢者之情卽 無窮也 特以聖人爲之 中制而不敢過 故必俯而趣之 非以三年之喪 爲足以報其親也 所謂三年 然後 免於父母之懷 特以責宰我之 無恩 欲其有以跂而及之爾’

<喪禮는 비록 三年에 그치나, 賢者의 마음은 限이 없다. 다만 聖人이 알맞는 制度를 만들었기 때문에 감히 지나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굽혀서 나아가는 것이지, 三年의 喪禮로써 어버이에게 恩惠를 충분히 報答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三年이 지난 뒤에야 父母의 품을 벗어난다고 한 말씀은 다만 宰我의 恩惠 없음을 나무라서 그가 따라가게 하려고 한 것일 뿐이다>

三年喪의 根據는 태어나서 三年 동안 父母의 품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父母에게 가장 많은 괴로움을 끼쳐 드렸고, 따라서 가장 큰 恩惠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期間 만이라도 父母의 恩惠를 잊지 말자는 것이다. 三年이라 하지만 사실상 二年 三個月에 不過한 것이다.

孟子의 三年喪에 대한 意見을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滕定公薨 世子謂然友曰 --- 吾欲使子 問於孟子 然後行事 --- 孟子曰 不亦善乎 親喪 固所自盡也 曾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可謂孝矣 諸侯之禮 吾未之學也 雖然 吾嘗聞之矣 三年之喪 齊疏之服 飣粥之食 自天子達於庶人 三代共之’⁹⁾

<滕나라 定公이 죽자 世子가 然友에게 말하기를 --- 내 자네로 하여금 孟子에게 묻은 뒤에 葬事를 行하고자 하노라 --- 孟子께서 ‘ 좋지 않는가, 親喪은 진실로 자신이 다해야 하는 것이다. 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섬기기를 禮로써 하며, 죽어서 葬事하기를 禮로써 하며, 祭

9) 孟子, 滕文公 上 2.

祀하기를 禮로써 하면 孝라고 이를 수 있다 하였으니, 諸侯의 禮는 내 아직 배우지 않았거니와, 그러나 내 일찍 들었으니, 三年喪에 齊疏의 喪服을 입으며, 미음과 죽을 먹음은 天子로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三代¹⁰⁾가 공통이었다>

이에 대해 同 註에서는 아래와 같이 풀이하였다.

‘父母之喪 罔人子之心 所自盡者 蓋悲哀之情 痛疾之意 非自外至 宜乎文公 於此 有所不能自已也’

< 父母의 喪은 진실로 자식의 마음에 스스로 다해야 할 것이니, 슬퍼하는 情과 아파하는 마음이 밖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러하니 마땅히 文公이 여기에 대하여 스스로 그만 둘 수 없는 슬픈 情이 있다고 한 것이다.>

이어서 滕文公의 喪禮 進行 結果를 아래와 記述하였다.

‘然友反命 定爲三年之喪 父兄百官 皆不欲曰 吾宗國 魯先君 莫之行 吾先君 亦莫之行也 至於子之身而 反之不可 止志曰 喪祭從先祖 曰吾所受之也 --- 孟子曰然 不可以他求者也 --- 是在世子 --- 世子曰然 是誠在我 五月居廬 未有命戒 百官族人 可謂曰知 及至葬 四方來觀之 顏色之戚 哭泣之哀 弔者大悅’

<然友가 反命(復命)하여 三年喪을 하기로 定하자, 父兄과 百官이 모두 하고자 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宗國 魯나라 先君께서도 이것을 行하지 않으셨고, 우리 先君께서도 또한 行하지 않으셨으니, 그대의 몸이 이르러 이것을 뒤집는 것은 不可합니다. 또한 記錄에 보면 喪禮와 祭禮는 先祖를 따르라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들이 傳受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 孟子께서 ‘그러하다. 다른 데서 求할 것이 아니다. --- 이것은 世子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 世子가 말하기를 ‘그렇다. 이것은 진실로 나에게 달려 있다.’ 하고 五個月 동안 廬幕에 居處하여 命令과 警戒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百官과 宗族들이 다 말하기를 ‘禮를 안다’ 하였으며, 葬禮때에 이르러 四方에서 와 구경하였는데, 얼굴 빛과 울음에 슬퍼함이 極盡히 나타나니 弔問하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滕나라 定公이 죽었을 때 服制 問題가 提起되었는데 당시 諸侯 중에는 옛 喪禮를 行하는 者가 없었는데, 文公이 홀로 이를 孟子에게 質問하여, 여러가지 論難 끝에 結局 孟子의 意見에 따라 옛 喪禮대로 行하게 된 것이다.

10) 三代;夏나라 殷나라 周나라를 말함.

또 孟子에는 堯임금이 죽자 百姓들과 舜임금이 三年喪을, 舜임금이 죽자 禹임금이 三年喪을, 禹임금이 죽자 益이 三年喪을 畢했다는 記錄이 있다.

‘堯典曰 二十有八載 放勳乃徂落 百姓 如喪考妣三年 遏密八音’¹¹⁾

‘堯崩 三年之喪畢 舜避堯之子 於南河’¹²⁾

‘舜崩 三年之喪畢 禹避舜之子 於陽城 --- 禹崩 三年之喪畢 益避禹之子 於箕山之陰’¹³⁾

孟子 때에 短喪의 問題가 여러번 論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래 記錄을 보아도 斟酌할 수 있다.

‘齊宣王 欲短喪 公孫丑曰 爲碁之喪 猶愈於已乎 --- 王子有其母死者 其傳爲之請數月之喪 公孫丑曰 若此者 何如也 曰是欲終之 而不可得也 雖加一日 愈於已 謂夫莫之禁 而弗爲者也’¹⁴⁾

‘不能三年喪 而總小功之察’¹⁵⁾

小學에도 小連 大連 및 高子臯 顏丁 등이 三年喪을 입었다는 記錄이 있다.

‘小連大連 善居喪 三日不怠 三月不解 期悲哀 三年憂 東夷之子也’

【集說】陳氏曰 三日親始死也 不怠謂哀痛之切 雖不食而 能自力 以致其禮也 三月親喪在殯時也 解與懈同 倦也 憂謂憂戚憔悴.¹⁶⁾

‘高子臯之 執親喪也 泣血三年 未嘗見齒 君子以爲難’ ‘顏丁善居喪 始死皇皇焉 如有求而弗得 既殯望望焉 如有從而不及 既葬慨然如不及 既反而息’

【集解】陳氏曰 顏丁魯人 皇皇猶栖栖也 望望往而不顧之貌 蓋感悵之意 始死形可見也 既殯柩可見也 葬卽無所見矣 如有從而不及 似有可及之處也 葬後卽 不復如有所從矣 故但言如不及其反 又云而息者 息猶待也 不忍決忘其親 猶且行且止 以待其親之反也.¹⁷⁾

11) 孟子, 萬章 上 4.

12) 孟子, 萬章 上 5.

13) 孟子, 萬章 上 6.

14) 孟子, 盡心 上 39.

15) 孟子, 盡心 上 46.

16) 小學, 稽古 第四.

17) 小學, 稽古 第四.

3. 方喪 三年 心喪 三年

父母가 죽었을 때는 致喪三年 임금이 죽었을 때는 方喪三年 스승이 죽었을 때는 心喪三年으로 되어 있는데, 方喪과 心喪은 어떤 것이었던가를 살펴 본다.

1) 方喪三年

禮記 檀弓 上에

‘事君 有犯而無隱 左右就養 有方 服勤至死 方喪三年’¹⁸⁾

<임금을 섬기는데 있어서는 犯顔하여 諫爭하는 일은 있으나, 임금의 허물을 덮어 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左右에 나아가 받들어 섬기되 一定한 限度가 있다. 임금을 위하여 힘드는 일에 服務하여 죽음에 이르며, 아버지의 喪에 比方하여 三年 동안 服喪한다>

라 하고, 同 註에

‘方喪 資於事父’

<方喪은 부모를 섬기는 方法을 取한다>

라 되어 있으며, 同 疏에는

‘方謂比方也 謂比方父喪禮 以喪君故云 資於事父 資取也 取事父之喪禮 以喪君 但居處飲食同耳 不能戚容稱其服’

<方은 서로 견주어 함을 말하는 것이다. 부모 상례를 견주어 임금의 상을 입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資於事父의 資는 취하는 것이다. 부모의 상례의 일을 취하여 임금의 상을 입는 것이다. 다만 거처 음식은 같이 하나 그 복에 맞는 슬픈 얼굴을 하기는 어렵다>

라고 했다. 小學의 同 集註에도

‘方喪 比方於親喪也’

<방상은 아버지의 상에 견주어 하는 것이다>

라 하여, 임금의 경우 父母의 喪과 같이 하지만, 居處나 飲食을 父母喪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服에 맞게 슬픈 얼굴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

18) 禮記 檀弓 및 小學, 卷二 明倫 通論.

우리나라의 문헌에 나타난 선현들의 경우를 살펴 본다.

‘及驪興之訃 不食菜果鹽醬 方喪三年’¹⁹⁾

<驪興²⁰⁾의 訃告를 듣고 채소 과일 소금 장을 먹지 않았다 >

‘太宗賓天 哀慟三年 人皆歎服’²¹⁾

<太宗이 돌아가시자 三年 동안 哀痛해 하니 사람들이 모두 歎服하였다.>

‘在開寧 遭世宗喪 與小尹 崔士老 遇諸塗 相持而哭 甚哀曰 所天崩矣 皆失聲而止 服衰經 向闕哀 臨又遭文宗喪 悲泣尤切曰 嗟嗟乎嗣君’²²⁾

<開寧에 있다가 世宗의 喪을 당하자 小尹 崔士老와 함께 길에서 만나 서로 붓들고 울면서 심히 슬퍼하며 말하기를 ‘하늘이 무너졌다’ 하며 失聲해서 그쳤다. 喪服을 입고 大闕을 向하여 슬퍼했다. 또 文宗喪을 당해서는 더욱 슬피 울면서 말하기를 ‘슬프고 슬프구나 世子²³⁾여’ 하였다.>

‘明宗昇遐 聞變 以烏紗帽 黑角帶 詣闕哭臨’²⁴⁾

<明宗이 昇遐하자 變을 듣고 검은 비단 모자와 검은 각띠로 大闕에 나아가 哭에 臨하였다.>

위와 같이 임금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의 先賢들은 一定한 服制에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람에 따라 時代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方喪三年의 制度는 確定된 어떤 것이 없었다고 하겠다.

2) 心喪三年

스승에 대한 心喪三年도 方喪三年과 마찬가지로 一定한 服制나 規定이 없는 것 같다. 앞에서 ‘黃帝以前 心喪終身不變 唐虞之日 心喪三年 亦未有服制 吉凶同服 惟有白布衣 白布冠而已’에 대해 이미 언급하였다. 우선 孔子 弟子들의 孔子에 대한 居喪을 살펴 본다.

19) 金埴, 海東名臣錄, 吉再.

20) 驪興; 禑王 1364 - 1398.

21) 金正國 撰, 孟巖 良昭公 墓碣文.

22) 金埴, 海東名臣錄, 金淑滋.

23) 嗣君; 世子

24) 退溪先生年譜 卷二, 先生 六十七歲.

‘孔子 葬魯城北 泗上 弟子皆服三年 三年心喪畢 相訣而去 卽哭 各復盡哀 或復留 惟子贛 廬於冢上 凡六年 然後去 弟子及魯人 往從冢而家者 百有餘室 因命曰孔里’²⁵⁾

<孔子는 魯나라 城 북쪽 泗水 위에 葬事하였다. 弟子들은 다 三年喪을 입었다. 心喪三年을 마치고 서로 離別하여 가면서 哭하고, 各各 또 슬픔을 다하였으며, 혹 다시 머무는 이도 있었다. 오직 子贛은 墓 위에 廬幕을 짓고 모두 六年 동안 있는 뒤에 갔다. 弟子 및 魯나라 사람들이 와서 墓를 따라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百餘 집이나 되어서 ‘孔里’라는 이름이 생겼다.>

禮記 檀弓 上에

‘事師 無犯無隱 左右就養無方 服勤至死 心喪三年’

< 스승을 섬기는데는 犯顔하여 諫爭하는 일이 없으며, 허물을 덮어 숨기는 일도 없다. 左右에 나아가 받들어 되시되 一定한 限度가 없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죽을 때까지 노력하여 마음으로 三年喪을 입는다.>

하고, 禮記 同 節에서 아래와 같이 註釋하였다.

‘心 表身無衰麻之服而 心有哀戚之情 所謂若喪父而 無服也, 張子曰 古不制師服 師服無定體也’

< 心이라는 것은 몸에는 喪服을 입어 나타냄이 없고, 마음에 슬픈 情이 있는 것이니, 말하자면 父母를 잃은 것 같으나 喪服을 입지 않는 것이다. 장자는 ‘옛날에 스승의 服을 마련하지 않았 으며, 스승의 服은 定體가 없다’고 했다.>

朱子家禮 本宗五服圖에 나타난 心喪三年은 아래와 같다.

‘凡男爲人後者 爲其私親 皆降一等 惟本生父母 降服不杖期 中心喪三年 其本生父母 亦爲之降服 不杖期’

常變通攷에 弟子가 스승을 위한 爲師心喪, 스승이 弟子를 위한 師爲弟子服에 대한 자세한 言及이 있다. 한 가지만 들어 본다

‘大學衍義補 心喪者 身無衰麻之服 而心有哀戚之情 三年之間 不飲酒 不食肉 不御內 時至而哀 哀至而哭 充充濯濯 慨然廓然 無以異於倚廬之間 几筵之下 兆域之側也夫 是之謂心喪’²⁶⁾

25) 史記, 卷 四十八, 孔子世家.

26) 常變通攷, 卷十三, 喪禮七, 爲師心喪.

先賢들의 스승에 대한 居喪의 境遇를 살펴 본다.

‘宋儒 黃幹 喪其師朱子 弔服加麻 制如深衣 用冠經 (淵源錄 心喪三年) 王柏 喪其師何基 服深衣 加帶經冠 加絲武 柏卒 其弟子金履祥 喪之則 加經于白巾 經如總麻 而小帶 用細苧布 黃王金三子 皆朱門之嫡傳 其所制之服 非無稽也 後世欲服師者 宜準之 以爲法云’²⁷⁾

‘公於陽村 朴菴之喪 皆行心喪三年 每值親忌 一粒不下口 垂淚終日’²⁸⁾
 < 공은 陽村 朴菴의 喪에 다 心喪三年을 行했고, 親忌를 當해서는 쌀알 하나 입에 넣지 않았으며, 終日 눈물을 흘렸다.>

‘言行錄 先生之喪 門人金就礪 著練布巾 深衣 卒哭除之 李國弼 亦著白巾 其餘門生 並以黑冠 白衣帶從事 金富弼 金富儀 金富倫 趙穆 琴應夾 琴應堧 琴蘭秀等 素帶素食 過小祥. 趙穆等 終三年不與宴 不入內’²⁹⁾

이상에서 보면 스승에 대한 心喪三年은 一定한 服制가 없고, 마음으로만 슬픈 情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었다.

蘭谷集 卷三 答兒問目에 보면

‘爲師心喪三年 弔服而加麻 然則三年之內 常著不脫 而亦以此出行也’

란 質問에 대해

‘檀弓曰 孔子之喪 二三子皆經而出 群居則經 出則否 愚伏曰 門人之喪 孔子若喪父 而無服 故弔服而加麻 於禮弔服而加麻者 出則免經 二三子乃七十子之徒 恩深而義重 所以出而猶經 有隆於常禮也 群謂其餘群弟子 其恩義之深重 不能如七十子之徒 故居則經 出則免 觀乎此則 所疑不難辨矣’

라 答하였다. 여기서 보면 스승의 喪에 家庭에서만 喪服을 입었고 밖에 나갈 때는 입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心喪三年의 對象으로 스승 외에 아래의 境遇가 해당된다.

父在爲母 嫡母 繼母 慈母 同, 嫡孫 祖在爲祖母 曾高祖母同, 爲本生父母, 爲出母嫁母, 舅在爲姑

27) 常變通攷 上註同.

28) 金堧, 海東名臣錄, 吉再.

29) 常變通攷, 卷十三, 喪禮七, 爲師心喪.

4. 韓國 服制之 變遷

古代 韓國 服制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東洋은 대강 비슷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러 文獻에 단편적으로 나타난 것을 根據로 하여 三國時代以後 服制의 變遷을 大略 살펴 본다.

高句麗 百濟 新羅 모두 服制를 마련하여 父母는 삼년상을 입었고, 그외는 차등을 두어 服을 입었다는 記錄이 있다.

‘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居父母及夫之喪 服皆三年 兄弟三月 初終哭泣 葬卽鼓舞作樂以送之 埋訖 悉取死者生時服玩車馬 置於墓側 會葬者 爭取而去’³⁰⁾

‘喪制如高麗’³¹⁾

‘死有棺斂 葬起墳陵 王及父母妻子喪 持服一年’³²⁾

‘妻子兄弟 以白布製服 貴人三年 殯於外 庶人卜日而瘞’³³⁾

‘父母及夫喪 其服制同於華夏 兄弟卽限以三月’³⁴⁾

‘父母及夫死者 三年治服 餘親卽 葬訖除之’³⁵⁾

‘服父母喪三年 兄弟踰月除’³⁶⁾

‘五年夏四月 制喪服法 頒行’³⁷⁾

高麗時代에 와서는 좀더 확실하게 施行되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六年 十月 辛巳 諫官 李穡等 請行三年喪 從之’³⁸⁾

‘六月 丁亥 命百官 行三年喪’³⁹⁾

‘惟殿下 立法祛弊 以布初政而 有司以省徭役 禁淫祀 獻議且請 行三年之喪 以敦愼終之義而 其儉戚之風卽 殊未之見也’⁴⁰⁾

그리고 高麗史 志 卷 第十八 禮六에는 五服制度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이 成宗 四年에 처음으로 定해졌음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30) 隋書,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東夷 高麗條.

31) 隋書 同 百濟條.

32) 隋書 同 新羅條.

33) 隋書 同 倭國條.

34) 周書, 卷四十九 異域傳 高麗條.

35) 周書 同 百濟條.

36) 唐書, 卷二百二十, 東夷列傳 考慮條.

37) 三國史記, 卷四, 智證麻立干條.

38) 高麗史 世家, 卷第三十九 恭愍王 二.

39) 同王 九年.

40) 高麗史 列傳 第三十 李穡.

士大夫들은 이 제도를 잘 따랐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일반 서민들은 상제가 문란하여 백일로 그치고, 三年喪을 입지 않았다.

‘時喪制紊弛 士大夫遭喪 皆百日即吉 公獨廬二親墓 哀禮俱盡 國家嘉之 爲旌其閭’⁴¹⁾

‘壬午 遭母喪 長子師文 繼卒 別制斬衰 服之’⁴²⁾

朝鮮 時代에는 經國大典 卷之三 禮典에 五服制度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制度가 確立되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잘 施行되지 않았으므로 여러 사람들의 論難이 있었다.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기록을 들어 본다.

‘憲司上言 自今勿論時散 許終三年之喪 申明家廟之制 禁三日葬及火葬 一依三月踰月之制下使擬議以聞’⁴³⁾

‘諫官柳觀等 上書曰 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故大小臣僚 勿論時散 許終其制 其有關係要務者 奪情起復 已有著令 竊見無職守 無關係者 不顧聖制 習循故常 僅滿百日而即吉 或以白衣白笠 奔走於朝路 恬不爲愧 非惟有乖於聖制 實有累於明時之盛典 風俗之薄 不可不慮也 --- 上允之’⁴⁴⁾

朱子 家禮에는 앞 부분에 ‘本宗五服之圖’ ‘三父八母服制之圖’ ‘妻爲夫黨服制之圖’ ‘外族母黨妻黨服圖’가 있고, 卷第四 喪禮 ‘成服’條에 이 服制가 완비되어 있는데, 일반 百姓들에게 얼마만큼 徹底히 施行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士大夫 階層에서는 거의 完全하게 實施되었으리라 斟酌된다. 아래 記錄은 그 端的인 例일 것이다.

‘開寧有民徐文者 遭母喪 廬墓三年 其父先母死 已三十餘年 悼其時身稚 未能持服 移父骸骨 合瘞母塋 又居三年 公(金淑滋)即具報于監司 監司云 文雖如是 無特異之感應 不可以聞諸朝 公歎曰 必待孟宗王祥而後 爲孝子 即 今之世 又焉有孝子乎 乃復其戶’⁴⁵⁾

41) 金堉, 海東名臣錄, 鄭夢周.

42) 金堉, 海東名臣錄, 吉再.

43) 太祖 四年乙亥 六月庚寅.

44) 太祖 七年 二月 戊寅朔.

45) 海東名臣錄, 金淑滋.

III. 成服 및 服制의 基準

1. 成服

成服이란 喪禮에 있어서 大斂을 한 뒤에 親屬들이 각각 服制에 따라 마땅히 입어야 할 服을 입는 것이다. 成服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을 보면 아래와 같다.

‘唯父母之喪 見星而行 見星而舍 若未得行 卽成服而后行’ ‘於三哭 猶括髮 袒成踊 三一成服’⁴⁶⁾

‘大斂之明日 死之第四日 五服之人 各服其服 入就位 然後朝哭 相弔如儀’ ‘楊氏復曰 三日大斂 可以成服矣 必四日而後 成服何也 大斂雖畢 人子不忍死其親故 不忍遽成服 必四日而後 成服也 禮生與來日 死與往日 取此義也’ ‘成服之日 主人及兄弟 始食粥 - 諸子食粥 妻妾及期九月 疏食水飲 不食菜果 五月三月者 飲酒食肉 不與宴樂 自是無故不出 若以喪事及不得已而出入卽 乘撲馬布鞍 素輜布簾’⁴⁷⁾

<儀節> ‘是日夙興 五服之人 各服其服 (去括髮免 著喪冠 以孝巾承之 加首經 服衰裳 承以中衣 帶絞帶腰經 著屨 杖非以上執杖 婦人去鬢 亦着冠 衰裳經帶屨杖. 雜記 ; 爲長子杖卽 其子不以杖 卽位) 男位於柩東 西向 女位於柩西 東向 各以服爲序 舉哀相弔 諸子孫 就祖父 及諸父前 跪哭盡哀 又就祖母及諸母前 亦如之 女子就祖母 及諸母前哭 遂就祖父及諸父前 如男子之儀 (賓至拜之)’ [按] 古之成服 必於朝哭 朝哭卽無拜而 今俗多兼行於朝典而 成服故有拜 實非禮也.⁴⁸⁾

<相弔如儀> ‘開元禮 諸子孫 就祖父及諸父前跪哭 皆撫哭盡哀 就祖母前 亦如之 女子子 對祖母及諸母哭 遂就祖父前哭 如男子之儀 惟諸父不撫之 訖各復位 伯叔母以下 就主婦 哭亦如之 諸尊者 降出還次 主人以下 降立於阼階下 外姻在南 小退俱西向 北上哭盡哀 各還次’⁴⁹⁾

2. 服制의 基準

服制에는 여섯 가지의 基準이 있는데, 禮記 大傳에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46) 禮記 奔喪.

47) 家禮 卷四 成服.

48) 四禮便覽 卷之四 喪禮 成服.

49) 常變通攷 卷之九 喪禮三 成服.

‘服術有六 一曰親親 二曰尊尊 三曰名 四曰出入 五曰長幼 六曰從服’

1) 親親 ; 親疎遠近을 말한다.

‘親親者 父母爲首 次妻子 伯叔’⁵⁰⁾ (大傳 疏)

‘親親 以三爲五 以五爲九 上殺下殺旁殺而親畢矣 (註; 己 上親父 下親子 三也 以父親祖 以子親孫 五也 以祖親高祖 以孫親玄孫 九也 殺謂親益疏者 服之即輕疏 以父親祖 以子親孫 鄰者三 今加祖孫故 五也. 下略)’⁵¹⁾

2) 尊尊 ; 身分 및 地位 高下를 말한다.

‘尊尊者 君爲首 次公卿大夫’⁵²⁾

3) 名 ; 名分을 말한다.

‘名者 若伯叔母 及 子婦 弟夫 兄嫂之屬’⁵³⁾

4) 出入 ; 女子 出嫁의 경우를 말한다.

‘出入者 女在室爲入 適人爲出 及 爲人後者’⁵⁴⁾

5) 長幼 ; 成人 未成을 말한다.

‘長幼者 長爲成人 幼爲諸殤’⁵⁵⁾

6) 從服 ; ‘從服有六 有屬從 有徒從 有從有服而無服 有從無服而有服 有從重而輕 有從輕而重’ (同)

(1) 屬從;子爲母之黨疏 屬謂親屬 妻從夫 夫從妻 竝是 < 常變通攷 喪禮 服制>

50) 禮記 大傳 疏.

51) 常變通攷 卷之九 喪禮三 服制 總論.

52) 常變通攷 同.

53) 常變通攷 同.

54) 常變通攷 同.

55) 常變通攷 同.

(2) 徒從;臣爲君之黨疏 與彼無親空服 彼之支黨 妻爲夫之君 妾爲女君之黨 庶子爲君母之親 子爲母之君母 並是 <上同>

(3) 有從有服而無服;公子爲其妻之父母疏 嫂叔無服亦是 <上同>

(4) 有從無服而有服;公子之妻爲公子之外兄弟疏 娣姒亦是 <上同>

(5) 有從重而輕;夫爲妻之父母疏 舅之子亦是 <上同>

(6) 有從輕而重;公子之妻爲皇姑

<小記> ‘從服者 所從亡卽已 (謂若君母之父母昆弟 從母也) 屬從者 所從雖沒也 服(謂若子爲己之母黨) <上同>

IV. 本宗 五服制度

五服이란 斬衰 齊衰 大功 小功 總麻를 말한다. 斬衰는 三年, 齊衰는 三年杖期 不杖期 五月 三月, 大功은 九月, 小功은 五月, 總麻는 三月 服을 입는다.

1. 斬衰 三年

禮記 檀弓 上에

‘事親 有隱而無犯 左右就養 無方 服勤至死 致喪三年’

< 아버지를 섬기는 데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숨기는 일은 있으나, 犯顔하여 諫爭함이 없고, 左右에 나아가 奉養하되 一定한 限度가 없으며, 아버지를 위하여 죽기에 이를 만큼 열심히 노력하며, 아버지가 죽으면 三年동안 슬퍼하며 極盡히 喪을 입어야 한다.>

이라 하고, 同 誌에

‘致 表極其哀毀之節也’

<致는 지극히 슬픈 것을 表하는 禮節이다.>

라 하였다. 그리고 朱子家禮에는 斬衰에 대해 아래와 같이, 意味 模樣 制度 등을 상세히 規定하였다.

‘斬 不緝也, 衣裳 皆用極麤生布 旁及下際 皆不緝也 衣縫向外 裳前三幅後四幅 縫內向 前後不連 每幅作三帖 帖謂屈其兩邊 相著而空其中也 衣長過腰足 以掩裳上際 縫外向背 有負版用布 方尺八寸 綴於領下 垂之. 以下

省略⁵⁶⁾

斬衰의 意味에 대해서 蘭谷先生의 解釋은 다음과 같다.

‘哀痛之心 有如斬割故 爲之斬衰’⁵⁷⁾

‘衰之言 摧也 表孝子有哀摧之情, 經之言 實也 明孝子有誠實之心’⁵⁸⁾

斬衰의 容體 聲音 言語 飲食 居處 등에 대한 禮記의 規定은 아래와 같다.⁵⁹⁾

‘斬衰 何以服苴 苴惡貌也 所以首其內而 見諸外也 斬衰貌若苴---此哀之發於容體者也’

‘斬衰之哭 若往而不返---此哀之發於聲音者也’

‘斬衰 唯而不對---此哀之發於言語者也’

‘斬衰 三日不食---故父母之喪 既殯食粥 朝一溢米 暮一溢米---此哀之發於 飲食者也’

‘父母之喪 居倚廬 寢苦寢塊 不脫經帶 --- 此哀之發於 居處者也’

또, 禮記 間傳에는 父母喪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를 아래와 같이 記錄하였다.

‘父母之喪 既虞卒哭 蔬食水飲 不食菜果 期而小祥 食菜果 又期而大祥 有醢醬 中月而禫 禫而醴酒 始飲酒者 先飲醴酒 始食肉者 先食乾肉, 父母之喪 居倚廬 寢苦枕塊 不脫經帶---此哀之發於居處者也, 父母之喪 既虞卒哭 柱楣翦屏 芻翦不衽 期而小祥 居堊室 寢有席 又期而大祥 居復寢 中月而禫 禫而牀’

斬衰服에 該當하는 境遇는 아래와 같다.⁶⁰⁾

其正服卽 子爲父也

其加服卽 嫡孫父卒 爲祖若曾高祖 承重者也, 父爲嫡子 當爲後者也

其義服卽 婦爲舅也, 夫承重卽 從服也, 爲人後者 爲所後父也, 爲所後祖 承重也, 夫爲人後卽 妻從服也, 妻爲夫也, 妾爲君也

56) 朱子家禮, 卷四 喪禮 成服.

57) 蘭谷先生文集 卷三 三十一張.

58) 蘭谷先生文集, 卷三 書 三十二張, 答兒問目.

59) 禮記 間傳.

60) 朱子家禮 參照.

韓國의 稱謂로는 妻, 子, 子婦, 承重孫 (曾玄同), 女娘子, 妾, 父爲嫡子當爲後者 등이다.

2. 齊衰 三年

齊衰에 關한 意味 模樣 制度 등의 朱子家禮 規定은 아래와 같다.

‘齊 緇也, 其衣裳冠制 竝如斬衰 但用次等 生布 緇其旁及下際 冠以布爲武 及纓首經 以無子麻爲之 大七寸餘 本在右末 繫本下布 纓腰經 大五寸餘 絞帶以布爲之 而屈其端尺餘 杖以桐爲之 上圓下方 婦人服同 斬衰但布用次等爲異 後皆放此’

齊衰의 容體 聲音 言語 飲食 居處 등에 대한 禮記의 規定은 아래와 같다.⁶¹⁾

‘齊衰貌 若槨---此哀之發於容體者也’

‘齊衰之哭 若往而返---此哀之發於聲音者也’

‘齊衰 對而不言---此哀之發於言語者也’

‘齊衰 二日不食---此哀之發於飲食者也’

‘齊衰 居堊室 芻翦不納---此哀之發於居處者也’

齊衰 三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⁶²⁾

其正服卽 子爲母也, 士之庶子 爲其母同而 爲父後卽 降也

其加服卽 嫡孫父卒 爲祖母 若曾高祖母 承重者也, 母爲嫡子 當爲後者也

其義服卽 婦爲姑也, 夫承重卽 從服也, 爲繼母也, 爲慈母 謂庶子無母而父命也, 妾之無子者 慈已也, 繼母爲長子也, 妾爲君之長子也

韓國의 稱謂로는 母爲嫡子 當爲後者이다.

1) 齊衰 杖朞

齊衰 杖期는 期年服으로 杖지를 집는 것이다. 服制 齊衰三年과 같으나, 다만 또 次等 生布를 使用한다. 이에 해당하는 境遇는 아래와 같다.⁶³⁾

其正服卽 嫡孫父卒 祖在 爲祖母也, 其降服卽 爲嫁母 出母也

其義服卽 爲父卒繼母嫁而 已從之者也, 夫爲妾也, 子爲父後卽 爲出母嫁

61) 禮記 閒傳.

62) 朱子家禮 參照.

63) 朱子家禮.

母 無服, 繼母出卽無服也

韓國의 稱謂로는 子出系者, 子婦, 女適人者 등이다.

2) 齊衰 不杖基

服制는 同上이나, 但 帛지를 집지 않고, 또 次等 生布를 사용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⁶⁴⁾

其正服卽 爲祖父母, 女雖適人不降也, 庶子之子 爲父之母而 爲祖後卽不服也, 爲伯叔父也, 爲兄弟也, 爲衆子男女也, 爲兄弟之子也, 爲姑姊妹 女在室及 適人而 無夫與子者也, 婦人無夫與子者 爲其兄弟姊妹 及 兄弟之子也, 妾爲其子也

其加服卽 爲嫡孫 若曾玄孫 當爲後者也, 女適人者 爲兄弟之 爲父後者也

韓國의 稱謂로는 孫, 孫女適人者不降, 從子, 從女娘子, 兄弟, 姊妹娘子, 伯叔父母, 姑母娘子, 父母爲衆子, 祖爲嫡孫(曾玄同) 등이다.

3) 齊衰 五月

服制는 同上이다. 其正服은 爲曾祖父母인데, 女適人者 降服하지 않는다. 韓國의 稱謂로는 曾孫, 曾孫女 適人不降의 경우이다.

4) 齊衰 三月

服制는 同上이다. 其正服은 爲高祖父母 女適人者 不降의 경우이다. 그리고, 宗服이 이에 해당하는데, 丈夫 婦人 爲宗子이다. 大功 以下는 다 齊衰 三月을 입은 뒤에 그 本服을 입는다.⁶⁵⁾

韓國의 稱謂로는 玄孫, 玄孫女 適人不降의 경우이다.

3. 大空 九月

服制는 同上이나, 다만 조금 거친 熟布를 사용하며, 負版과 衰辟領이 없고 首絰은 五寸餘, 腰絰은 四寸餘이다.⁶⁶⁾

蘭谷先生이 밝힌 大功 小功의 意味는 아래와 같다.

64) 朱子家禮.

65) 常變通攷, 卷十三, 宗服.

66) 朱子家禮.

‘功灰治之功也 布之用功 麤大者曰大功 細小者曰小功’⁶⁷⁾

大功의 容體 聲音 言語 飲食 居處 등에 대한 禮記의 規定은 아래와 같다.

‘大功貌 若止, 大功之哭 三曲而偯, 大功 言而不議, 大功 三不食---不食醯醬, 大功之喪 寢有席’⁶⁸⁾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其正服卽 爲從父兄弟姊妹 謂伯叔父之子也, 爲衆孫男女也

其義服卽 爲衆子婦也, 爲兄弟子之婦也, 爲夫之祖父母 伯叔父母兄弟子之婦也, 夫爲人後者其妻 爲本生舅姑也 <以上 家禮>

韓國의 稱謂로는 孫 出系者, 出系者之子, 出系者之女娘子, 兄弟出系者及本生, 姊妹適人者 爲父後者 不降, 從子出系者 及本生, 從女適人者, 伯叔父母出系者 及本生, 姑母適人者. < 以上 降大功 > 孫婦, 姪婦, 從兄弟, 從姊妹娘子, 祖爲衆孫, 祖母爲孫. < 以上 大功 >

4. 小功 五月

服制는 同上이나, 다만 조금 익은 細布를 사용하고, 冠左縫 首經 四寸餘 腰經三寸餘이다.⁶⁹⁾ 小功 總麻의 容體 聲音 言語 飲食 居處 등에 關한 禮記 閒傳의 規定은 아래와 같다.

‘小功 總麻 容貌可也 哀容可也 議而不及樂 再不食---不飲醴酒 牀可也’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其正服卽 爲從祖祖父 從祖祖姑 謂祖之兄弟姊妹也, 爲兄弟之孫, 爲從祖父 從祖姑 爲從祖祖父之子 父之從父兄弟姊妹也, 爲從父兄弟之子也, 爲從祖兄弟姊妹 謂從祖父之子 所謂再從兄弟姊妹也, 爲外祖父母 謂母之父母也, 爲舅 謂母之兄弟也, 爲甥也, 謂姊妹之子也, 爲從母 謂母之姊妹也, 爲同母異父之兄弟姊妹也

韓國의 稱謂로는 出系孫婦, 出系姪婦 及本生, 出系子之女 適人者, 從兄弟 出系者 及本生, 從姊妹 適人者, 本生姊妹 適人者, 本生從女 適人者. <以上 降小功>

67) 蘭谷集, 卷三 書, 三十二張, 答兒問目.

68) 禮記 閒傳.

69) 朱子家禮.

從孫，從孫女娘子，從姪，從姪女娘子，從叔父母，從姑娘子，從祖父母，從祖姑娘子，再從兄弟，再從姊妹娘子，兄弟嫂。〈以上 小功〉

其義服卽 爲從祖祖母也，爲夫兄弟之孫也，爲從祖母也，爲夫從兄弟之子也，爲夫之姑姊妹 適人者 不降也。以下 省略 〈家禮〉

5. 麻 三月

服制는 同上이나, 다만 극히 가는 熟布를 사용하고, 首經은 三寸 腰經은 二寸 인데, 모두 熟麻를 쓰며, 갓끈 또한 같이 한다.⁷⁰⁾ 參考로 周禮와 禮記에 있는 總麻에 關한 記錄을 보인다.

‘王爲三公六卿 錫衰，爲諸侯 總衰，爲大夫士 疑衰，其首皆弁經’ 〈周禮〉

‘四世而 總服之窮’ 〈禮記〉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其正服卽 爲族曾祖父 族曾祖姑 謂曾祖之兄弟姊妹也，爲兄弟之曾孫也，爲族祖父族祖姑 謂族曾祖父之子也，爲從父兄弟之孫也，爲族父族姑 謂族祖父之子也，爲從祖兄弟之子也，爲族兄弟姊妹 謂族父之子 所謂三從兄弟姊妹也，爲曾孫玄孫也，爲外孫也，爲從母兄弟姊妹 謂從母之子也，爲外兄弟 謂姑之子也，爲內兄弟 謂舅之子也。(以下 省略)

改葬의 경우도 主人은 服總, 應服三年者 服總이다.⁷¹⁾

韓國의 稱謂로는 出系子之孫 女娘子, 出系孫之女娘子, 本生兄弟嫂 及出系者, 從孫出系者 及本生, 從孫女 適人者, 從姪出系者 及本生, 從姪女 適人者, 本生從姊妹 適人者, 從叔父母 出系者 及本生, 從姑適人者, 從祖父母 出系者 及本生, 從祖姑 適人者, 再從兄弟 出系者 及本生, 再從姊妹 適人者. 〈以上 降總麻〉

曾孫婦, 玄孫婦, 曾高祖爲曾玄孫 母亦同, 從曾孫, 從曾孫女 娘子, 從孫婦, 從姪婦, 從兄弟嫂, 從曾祖父母, 從曾祖姑 娘子, 再從孫, 再從孫女 娘子, 再從姪, 再從姪女 娘子, 再從祖父母, 再從祖姑 娘子, 再從叔父母, 再從姑 娘子, 三從兄弟, 三從姊妹 娘子. 〈以上 總麻〉

70) 家禮.

71) 常變通攷, 卷二十一, 改葬條.

V. 三父 八母 服制

三父는 同居繼父 不同居繼父 元不同居繼父를 말하고, 八母는 嫡母 繼母 庶母 慈母 乳母 養母 出母 嫁母를 말한다. 寒岡 鄭述先生은 五服沿革圖에서 八母外 師母 保母를 더하여 十母라 하였으며, 師母 慈母 保母를 三母라 하였다. 이들에 대한 服制를 알아 본다.

1. 三父

1) 同居繼父는 繼父 父子가 다 大功 以上の 親戚이 없는 경우에 義服으로 不杖期이다.⁷²⁾

2) 不同居繼父는 어머니가 개가함을 따라 가서 계부와 동거하다가 뒤에 동거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경우이거나, 혹 비록 함께 살더라도 繼父가 자식이 있어 이미 大功 以上の 親戚이 있으면 齊衰 三月의 服을 입는다.

3) 元不同居繼父는 無服이고, 異父 同母之 兄弟姉妹는 各 服小功五月이다.

2. 八母

1) 嫡母는 窀이 자식을 낳았을 때 父의 正室을 嫡母라 한다. 嫡母는 正服齊衰三年이다. 그 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母媒嫡子 亦報服, 爲衆子卽 服不杖期, 庶子爲嫡母之 父母兄弟姉妹 小功 母死不服

2) 繼母는 父가 再娶한 母이며, 義服 齊衰三年이다. 그 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繼母爲長子 報服齊衰三年, 爲衆子 乃服不杖期, 繼母出卽 殯服, 若父卒 繼母嫁而已從之 乃服杖期 繼母報服不杖期, 母出 爲繼母之 兄弟姉妹 小功

3) 庶母는 父 妾의 아들이 있는 자를 衆子가 말하는 것으로, 義服 總麻이다. 그 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士之庶子 爲其母 齊衰三年 爲父後卽降, 庶子爲父後者 爲其母總而 爲其母之 父母兄弟姉妹卽 無服, 庶子之子 爲父之母 不杖期而 爲祖後卽 無服, 庶母爲其子 爲君之衆子 齊衰不杖期, 爲君之長子 齊衰三年, 妾爲君 斬衰三年, 爲女君爲其父母 不杖期, 庶母慈已者 謂白小 乳養已者 義服 小功

4) 慈母는 庶子가 어머니가 없어서, 父가 窀이 자식이 없는 자에게 명하여 자기를 기른 친모와 같은 이로, 義服 齊衰三年이고, 不命卽 小功이다.

5) 乳母는 어려서 젖을 먹인 어머니인데, 義服 總麻이다.

72) 家禮. 以下 同.

6) 養母는 同宗 및 三歲 以下 遺棄한 자식을 기른 자로 친모와 같이 正服 齊衰 三年이다.

7) 出母는 아버지를 떠나버린 어머니로, 降服하여 杖期이다. 그 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母爲子 降服不杖期, 女適人 爲出母 乃降服大功, 母爲女 亦報服

8) 嫁母는 父가 죽고 母가 再嫁한 어머니인데 降服 杖期이다. 그 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母爲子 乃服不杖期, 女子已適人者 乃服大功, 母爲女 報服, 子爲父後者 不服, 前夫之子 從己嫁者 服不杖期

VI. 妻爲夫黨 服制

妻가 夫黨을 따른 服制는 다음과 같다.

1. 斬衰 三年 ; 夫, 舅(媳父). 齊衰 三年 ; 姑(媳母), 長子
2. 杖期 ; 衆子, 嫡婦, 夫姪, 夫姪女
3. 大功 ; 夫祖父母, 夫之伯叔父母, 夫姪婦, 衆婦, 孫
4. 小功 ; 夫兄弟姊妹婦, 夫親姑, 夫姊妹, 夫堂姪, 夫堂姪女, 夫姪孫, 夫姪孫女
5. 總麻 ; 夫高祖父母, 夫曾祖父母, 夫伯叔祖父母, 夫祖姑, 夫堂伯叔父母, 夫堂姑, 夫堂兄弟, 夫堂姊妹, 夫從堂姪, 夫堂姪婦, 夫從堂姪女, 夫堂姪孫, 夫姪孫婦, 孫婦, 曾孫, 元孫, 夫堂姪孫女, 夫曾姪孫女

VII. 外族母黨 妻黨 服制

外家와 妻家の 服制는 다음과 같다.

1. 小功 ; 外祖父母, 內舅(外叔), 舅之婦(外叔母), 從母(姨母), 甥(甥姪), 甥女(甥姪女), 外孫, 外孫女, 姨姪, 姨姪女.
2. 總麻 ; 夫之外祖父母, 夫之舅, 妻父母, 妻親母 雖嫁出 猶服, 夫之從母(夫之姨母), 外從兄弟姊妹(姑之子 - 姑從兄弟姊妹), 內從兄弟姊妹(內舅之子), 從母之子(姨從兄弟姊妹), 甥婦(甥姪婦), 壻, 外孫, 外孫婦, 外孫 出系者, 甥姪 出系者, 內舅 出系者,

VIII. 三 殤

三殤에 대한 記錄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有虞氏 瓦棺 夏后氏 槨周 殷人棺槨 周人牆置斂 周人以殷人之棺槨 葬長殤 以夏后氏之 槨周 葬中殤 下殤 以有虞氏之瓦棺 葬無服之殤’⁷³⁾
 ‘凡爲殤服 以次降一等’⁷⁴⁾ <家禮 成服>

1. 長殤 은 年중九에서 중六까지를 長殤이라 하며, 長殤은 降服 大功九月이다.

2. 中殤은 중五세에서 중二세 까지를 말하며, 中殤은 七月이다.

3. 下殤 ‘중一세에서 八歲 까지를 말하며, 下殤은 小功 五月이다.

가례에는 ‘應服大功以下 以次降等 不滿八歲 爲無服之殤 哭之以日易月 生未三月卽 不哭也 男子已娶 女子許嫁 皆不爲殤’라 했다.

IX. 結 論

三峯 鄭道傳은 朝鮮經國典에서 喪制의 紊亂함을 다음과 같이 慨歎하였다.

‘近世 以來 喪制大壞 初喪未葬 珍產盛饌之狼藉 鐘鼓之喧轟 男女之混雜而 主喪者 惟應對供辦之 不給是慮 何暇哀死而 恤亡哉. 是以 居喪者 無定日之制 又無憾容慘色 笑語如平日. 至親如此 況其下者乎 見聞習俗 恬不爲怪 蓋以人子之情 無古今之異而 習俗使之然也’.

< 近世 以來 喪制가 크게 무너져서, 初喪을 當하고 葬事를 지내지 않았는데도 珍產盛饌을 狼藉하게 벌여 놓고, 시끄럽게 風樂을 올리기도 하며, 男女間에 混雜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主喪者가 사람과 應對하며 일을 처리하느라 餘念이 없으니 어느 餘暇에 죽은 이에게 슬픈 마음을 나타내겠는가. 이러한 까닭으로 居喪을 하는 이가 날자를 定해서 節制함이 없고, 또 슬픈 얼굴이나 慘憺한 빛이 없이, 웃고 말하는 것이 平日과 같다. 至親이 이와 같으니 그 아랫 사람이야 말할 것 있겠는가. 보고 들은 習俗이라, 아무렇지도 않고 괴상하게 생각도 없으니, 대개 사람의 情이란 古今이 다를 바가 없는데, 習俗이 그렇게 된 때문이다.>

이러한 慨歎은 어느 때나 있었을 것이다. 세상이 시끄럽고 混亂할 때는 그것이 더욱 심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나았을 것이다. 또 이러한 것은 上流層과 下流層에 따라 언제나 차이가 있는 것, 歷代 知識人들의 憂慮와 改善해 보려는 노력은 끊임 없이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現實은 어떤가. 일부 宗教人들을 除外하고는 정말 一定한

73) 禮記 檀弓 上.

74) 家禮 成服.

制度和規則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진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나 먼저 닥치는 대로 끌려가기 마련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야 언제나 그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나라를 이끌어 가는 政治人 教育者 藝術家 經濟人 등 最上流層으로 自處하는 사람들도 하나 다를게 없다. 平時에 無關心하여 喪制 節文을 講究하지 않다가, 倉卒間에 당하니 도무지 아득하여 아는 것이 없으므로 愼終 追遠의 意味를 잃어버린 때문이다. 服制는 亡人에 대한 親疎와 厚薄, 尊卑와 長幼의 身分에 따라 一定한 期間 一定한 喪服을 입어, 哀悼의 情意를 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親族 關係의 輕重 및 範圍의 標準, 行爲의 效力과 犯罪의 輕重을 決定하는 準則도 된다. 그러므로 服制는 非但 禮敎뿐만 아니라 法制 및 社會制度上 重視하지 않으면 안된다. 古禮는 크게 무너지고, 새로운 법은 亂雜하니 매우 슬픈 일이다. 喪服 制度는 한결같이 家禮에 따라 文飾을 힘쓰지 말고, 現實 生活化하는 것이 急先務이다.

그렇다고 朱子家禮에 있는 喪服 制度를 그대로 따르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 屈巾 制服을 꼭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洋服에 頭巾 쓰는일, 日帝 때 하던 喪章을 着用하는 일, 검은 洋服에 넥타이 매는 일, 服制에 없는 葬儀社 나름의 喪服 등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모든 것이 앞으로의 研究 課題이다.

<1994.12.13. 香港大學, 第八屆亞洲族譜學術研討會에 發表>